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6
2024. 5. 3.(금)

차 례

고 시(4)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4-53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54호) 7
- 2024년 빈집실태조사계획 고시(안)(고시 제2024-55호) 8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공사완료) 수정고시(고시 제2024-56호) 10

공 고(3)

- 대전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공고 제2024-511호) 11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공고 제2024-521호) 13
-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수정공고(공고 제2024-523호) 40

입 법 예 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00호) 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28호)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29호) 52

그 밖 의 사 항(1)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34호) 59

공 람									
----------	--	--	--	--	--	--	--	--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 상서동간 단절된 마을에 도로를 개설하여 장동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기 고시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 127호(2020.11.27.)]에 대해 시행승인(변경)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 사업의 명칭 : 회덕동(장동) ~ 상서간 도로개설사업
 - 사업의 목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선정·반영된 장동(장동 육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서동(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과거 주한미군 시설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자유롭지 못했던 장동 일원을 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 장동 ~ 상서동간 단절된 마을에 도로를 개설하여 장동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증진 및 복지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3.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1-장동3) : L=1,368m, B=10~11m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8년 ~ 2024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장동 3	10 ~ 11	국지 도로	1,368	장동 370-2	상서동 54-2	일반 도로	-	대덕구고시 2020-127호 (2020.11.27.)	-

○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장동 3	10 ~ 11	국지 도로	1,368	장동 370-2	상서동 54-2	일반 도로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116-1 ~ 상서동 산 12-1

- 설계구간 : 소로1 - 장동3호선 외 2개노선(L=1.62km, B=10~11m)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변경) : 따로붙임

○ 변경사유 : 측량 및 분할에 따른 지번, 면적 변경

8.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토 지 조 서

□ 대덕구 장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70-6	대	363	41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2	370-3	답	288	11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3	371-4	전	192	2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	370-8	답	309	30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	365-7	체	566	566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	371-6	전	49	4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7	371-7	전	380	3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8	374-4	답	25	2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9	375-3	답	383	383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0	831-42	천	415	415	국	국토교통부			
11	산 117-10	임	10,153	10,153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2	산 116-19	임	589	58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합 계			13,712	13,050					

□ 대덕구 상서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산16-6	임	2,107	2,10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2	산16-7	임	6,278	6,27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	산17-9	임	515	51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	산 17-10	임	1,162	1,162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산15-1	임	7,668	7,66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	19-3	전	793	793	국	기획재정부			
7	19-6	전	29	2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8	19-7	전	80	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9	산 17-11	임	432	432	송○업 외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00-000			
10	21-3	전	888	888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1	799 -10	구	556	5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20	전	205	205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13	22-5	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4	24-4	답	68	68	국	국토교통부			
15	23-1	답	131	131	국	국토교통부			
16	22-4	전	474	474	국	국토교통부			
17	26-3	답	467	467	국	국토교통부			
18	26-4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19	27-1	전	153	153	국	국토교통부			
20	799 -11	구	1,121	1,121	국	철도청			
21	799 -12	구	1,214	1,214	국	철도청			
22	31	전	1,233	418	국	국토교통부			
23	31-4	전	20,533	3,911	국	국토교통부			
24	58-2	임	883	282	국	국토교통부			
25	58-1	임	2,502	125	국	국토교통부			
26	54-2	전	1,498	673	국	국토교통부			
27	55-5	전	3,609	577	국	국토교통부			
28	산20-2	임	298	32	국	국토교통부			
29	55-4	전	530	3	국	국토교통부			
30	31-3	전	19	19	국	국토교통부			
31	54-1	전	612	179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32	31-1	전	1,507	380	국	국토교통부			
33	산23-5	임	5,355	235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4	산21-3	임	496	35	국	국토교통부			
35	산22-2	임	397	43	국	국토교통부			
36	49-1	대	2,809	76	㈜○○1급 자동차공업사	대덕구 상서당3길 20-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신탄진지점)	
37	49-2	임	184	184	㈜○○1급 자동차공업사	대덕구 상서당3길 20-0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신탄진지점)	
38	산21-1	임	3,967	212	송○홍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0, 100동 1000호			
39	46-3	대	150	70	송○섭	동구 충무로203번길 30			
40	46-4	대	205	146	송○섭	동구 충무로203번길 30			
41	46-2	대	567	233	권○구	유성구 지족동 800 ○○마을아파트3단지 300-1000			
42	46	대	1,406	188	유○기	대덕구 상서동 40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신탄진지점)	
43	804	도	1,511	171	국	국토교통부			
44	44	임	212	169	송○섭 외2	대덕구 상서동 200			
45	43	전	1,412	5	심○철	대덕구 상서동 100-0 대창아파트 3동 100호			
46	45-1	답	273	180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47	420	답	1,980	243	김○옥	대덕구 중리동 300-0 300호			
48	45	답	144	123	박○자	세종시 남세종로 300, 200동 1000호			
49	419-2	장	1,840	425	정○용	서구 삼천동 900 국화아파트 600-1000			
50	419-4	도	374	374	정○용	서구 삼천동 900 국화아파트 600-1000			
51	426	창	730	166	오○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0동 1000호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52	426-1	답	341	341	오○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0동 1000호			
53	426-2	답	28	28	오○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0동 1000호			
54	427	장	1,645	5	(유)○○알씨	대덕구 상서동 400-0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55	426-3	답	37	37	오○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0동 1000호			
56	425-1	도	51	3	오○근	대덕구 덕암로 200, 100동 1000호	신탄진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덕구 덕암로181번길 2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7	839	도	1,932	37	국	국토교통부			
58	423 -13	임	893	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59	423-2	임	1,127	47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60	423-4	임	401	5	㈜○○테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00-100			
합 계			88,196	34,892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
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읍내동 450-1	대전로1331번길 40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13,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5. 3.
대화동 413-3 외 5필지	대화로132번안길 34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1,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2024. 5. 3.
오정동 330-12	오정로63번길 78-19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5. 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2024년 빈집실태조사계획 고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덕구 관내 빈집실태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가. 취 지 : 지역 내 방치된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 등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

나.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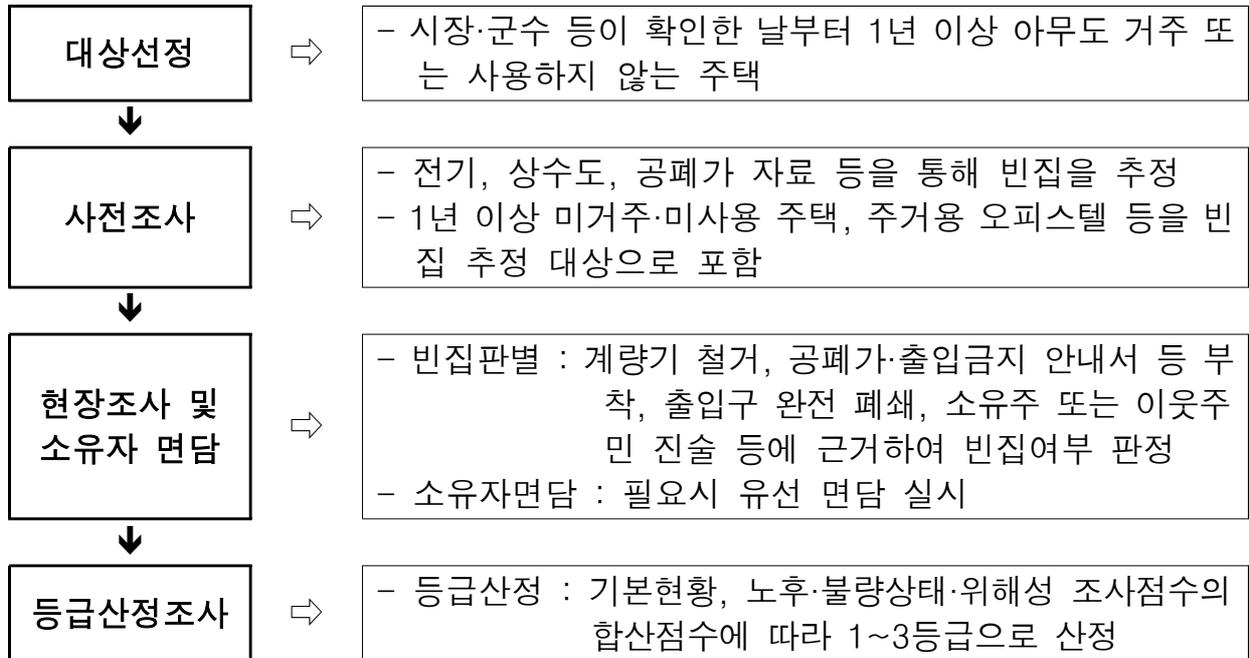
가. 기 간 : 빈집실태조사 착수 후 10개월(2024. 4. ~ 2025. 02.)

나.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빈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빈집 제외 주택 :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참조

3. 실태조사의 내용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가. 대행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대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다. 대행업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 빈집실태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화 및 기술지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기타사항

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부동산원(☎053-663-8763)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944)로 문의바람. 끝.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공사완료) 수정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44호(2024.4.12.)로 고시한 바 있는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내용에 누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수정사유 및 내용

- 수정사유 : 도시관리계획(와동소공원 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원명 누락
- 수정내용
 - 당초 :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결정

- 변경 :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와동 소공원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결정

2. 그 외의 사항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끝.

대전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입안 제안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시설종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탄진 중앙중학교	덕암동19-1	중학교	20,285.7	감) 3,220.8	17,064.9	1980.02.21. (건설부고시 제51호)	
신설	대전 온라인학교	덕암동19-1	각종학교	-	증) 3,220.8	3,220.8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안)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탄진 중앙중학교	· 신탄중앙중학교 변경 20,285.7㎡ → 17,064.9㎡ 감) 3,220.8㎡	· 대전온라인학교 신설에 따른 신탄중앙중학교 면적감소
대전 온라인학교	· 대전온라인학교 신설 0㎡ → 3,220.8㎡ 증) 3,220.8㎡	· 학생들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신설

2. 공람기간 : 2024. 5. 3. ~ 2024. 5. 24.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대덕구 도시계획과(별관 4층)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끝.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구 문평동 42-1번지 일원의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 고 명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평동 42-1번지 롯데칠성 대전공장 증축공사)
- 공고기간 : 2024. 5. 3.(금) ~ 2024. 5. 8.(수)
- 사업내역

사업명 : 문평동 42-1번지 롯데칠성 대전공장 증축공사	
<p>가. 사업주체 : 롯데칠성음료(주) 나. 설 계 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다. 시 공 사 : 롯데테크(주) 대표이사 이관호 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6,200㎡ ○ 연면적 : 63,245.56㎡ / 증축면적 : 18,256.93㎡ ○ 규 모 : 지하 1층/지상 4층 ○ 용 도 : 공장 ○ 공사기간 : 2024. 5. ~ 2025. 12. (36개월) ○ 허가일: 2023. 8. 8. <p>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32,591,000,000원 (VAT별도) ※ 건축물의 초기·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 제7항에 따라</p> <p>공사비 효율에 따라 산정하였음.</p>	<p>바. 입찰가격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31,906,430원 <small>(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미만 절사)</small> ○ 복수예비가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 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p>※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4.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금 액	산출근거
제1종 시설물 (건축 공사)	1종시설물 건축물 정기점검	1차	6,716,680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47조 및 [별표8]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2차	6,716,680	
		3차	6,716,680	
	건축물 초기점검	초기점검	8,743,190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1차	2,000,000	
		2차	2,000,000	
계			32,893,230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와 횟수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4. 5. 9.\(목\) 09:00 ~ 2024. 5. 14.\(화\) 14: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예정가격은 “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4. 5. 14.(화) 15: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5. 16.(목) 09:00 ~ 2024. 5. 16.(목) 18:00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대덕구청 건축과(본관 1층) / 건축허가팀 042-608-5152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5. 17.(금) 09:00 ~ 2024. 5. 20.(월)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대덕구청 건축과(1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③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민원처리되었습니다.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함.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대덕구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

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공고(대덕구 공고 제 2021-891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응모서류

: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대덕구 공고 제2023-1047호)」 [별첨2] 참고하여 제출.

※ [별첨1]의 서약서 인감 날인하여 첨부할 것.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덕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 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카.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구 분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등록명부 기준으로 별도 지정
입찰가격	50점	60점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 - 2 \times (0.88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 - 4 \times (0.88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2)	(1) 사업책임기술자	(17)	-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6	5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6	5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7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0년 이상	6	5	4	3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0년 이상										
	6	5	4	3										
	(다) 실적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4.3</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가 안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포함 등)은 명부삭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0	4.3	3.5	2.8	2.0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0	4.3	3.5	2.8	2.0									
(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	-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건설기술자,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6	5	4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6	5	4												
(나) 경력	6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15년 이상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6	5	4	3				
15년 이상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6	5	4	3											
(3) 분야별 참여기술자	(10)	-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3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3										
(나) 경력	5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미만	5	4	3	2	1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미만										
5	4	3	2	1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 산출기준 : 기술자수(기술사, 건축사×1)+(특급×0.8)+(고급×0.6)+(중급×0.4)+(초급×0.2)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8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4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r> </table>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를 제외한 기술자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평가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13	12	11	10	9	8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13	12	11	10	9	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30)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 산정방법 : 용역(각 현장별 1회만 인정) 건수, 금액 ×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2건 이상</td> <td>8건 이상</td> <td>4건 이상</td> <td>1건 이상</td> <td>무실적</td> </tr> <tr> <td>15</td> <td>14.2</td> <td>13.4</td> <td>12.6</td> <td>11.8</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억원 이상</td> <td>3.5억원 이상</td> <td>2억원 이상</td> <td>1억원 이상</td> <td>1억원 미만</td> </tr> <tr> <td>15</td> <td>14.2</td> <td>13.4</td> <td>12.6</td> <td>11.8</td> </tr> </table> <p>* 용역 수행실적은 완료일 기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p>	12건 이상	8건 이상	4건 이상	1건 이상	무실적	15	14.2	13.4	12.6	11.8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5	14.2	13.4	12.6	11.8																								
			12건 이상	8건 이상	4건 이상	1건 이상	무실적																																								
15	14.2	13.4	12.6	11.8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5	14.2	13.4	12.6	11.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재제처분 및 벌점 확인																																												
	(3) 재정상태 건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점수</th> <th>회사채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3.0</td> <td>AAA</td> <td>-</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A+, AA0, AA-</td> <td>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0</td> <td>A2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9</td>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0</td> <td>A3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2">2.8</td> <td>BB+, BB0</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td> <td>B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7</td> <td>B+, B0, 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6</td> <td>CCC+이하</td> <td>C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이하	C이하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라. 투자 및 기술개발 실적 (8)	(1) 투자실적	(6)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3%이상</td> <td>2%이상</td> <td>1%이상</td> <td>0.5%이상</td> <td>0.5%미만</td> </tr> <tr> <td>6.0</td> <td>5.5</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3%이상	2%이상	1%이상	0.5%이상	0.5%미만	6.0	5.5	5.0	4.5	4.0																																		
	3%이상	2%이상	1%이상	0.5%이상	0.5%미만																																										
6.0	5.5	5.0	4.5	4.0																																											
(2) 기술개발실적	(2)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1.0)+(건설기술 특허건수×0.6)+(건설기술실용신안×0.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가점 (2.8)	(1) 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p>- 현장 정기안전점검에 참여 가능한 관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고,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의 가설구조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점검 참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p> <p>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1항 및 동법 시행령 101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관계전문가 :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등록된 기술사 <p>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등 - 전문가 : 공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물 제외) </div> <p>*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중 1인을 대상으로 평가</p>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p>-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able> <p>*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p>	3%이상	2%이상	1%이상	0.3	0.2
3%이상	2%이상	1%이상						
0.3	0.2	0.1						
바. 감점 (-6)	부실별점	(-6)	<p>-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p> <p>*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제재처분 및 별점 확인</p>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등록명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PQ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한다.
 -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에 대한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중 ‘인정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명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한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이란 동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상의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말하며,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진단 등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정기안전점검과 무관한 기간을 임의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 마. 참여기술자가 라.항목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바.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PQ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는 겸임이 불가하며, 참여기술자 인원 보유현

항은 반드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산입되는 경우 모든 권역의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2.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란 동법 제6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상의 정기안전점검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용역수행 실적(건수, 금액) 산정시 정기안전점검(점검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의 가중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및 별표1 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과 초기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 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초기점검 대상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위 지침 제 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을 모두 완료하여 최종준공이 된 경우를 의미함] 단, 초기점검만 별도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인정불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산정시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을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재(부분)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공공)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에 의한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민간)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세금계산서,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및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3. 점검·진단 평가결과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확인서'로 평가하며,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8-2]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 한국기술사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로 평가하여, 경력증명서 갑지(별첨 및 제재사항 확인가능 부분)를 제출한다.

다. PQ참여업체는 별첨 [서식9]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내역을 작성 제출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PQ참여업체가 별첨 [서식10]에 따라 작성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합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하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를 별첨 [서식11]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년도부터의 해당자료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PQ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술개발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바. 기술개발실적의 가점해당 여부를 [서식12]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8.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가. 신규 건설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 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등 경력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9. 감점(부실벌점 및 입찰불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하되, 증빙 누락시 하한점을 적용한다.
-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로 확인하며,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 다.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내역을 별첨 [서식13]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접수번호

2024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0000 신축공사)

2024년 월 일

(회사명)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업 체 명 : (주)○○엔지니어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한도	평 점		비 고
				신청자	지정권자	
가. 참여기술자 (52)	(1)사업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 실적	5	2		
	(2)분야별책임기술자	(1) 자격	6	6		
		(2) 경력	6	6		
	(3)분야별참여기술자	(1) 자격	5	5		
		(2) 경력	5	5		
(4) 참여기술자 인원보유 현황			13	11		
소 계			52	47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30)	(1) 정기안전점검실적	건수	15	11.8		
		금액	15	11.8		
	소 계			30	23.6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4	4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3		
	소 계			10	10	
라. 투자 및 기술 개발실적(8)	(1) 투자실적		6	6		
	(2) 기술개발실적		2	2		
	소 계			8	8	
마. 가점(2.8)	(1) 참여기술자중 관계전문기술자 보유		2.5	2.5		
	(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0.3		
	소 계			2.8	2.8	
바. 감점	부실벌점 및 입찰불참		(-6)	0		
합 계			100	91.4		

- ※ 1.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지정권자 란은 지정권자가 작성(이하 동일)
 2. 비고란에는 하한점인 경우 '하한점' 을 기재(하한점인 경우 증빙제출 불필요)

상기 종합평가표는 [부표] 평가기준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명부 삭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회사명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 ○ ○ (인)

[서식3]

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기술 부문	전문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취득 일자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일자	근무 기간	비고
1													사책
2													분책
3													분참
4													
5													

-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자), 분책(분야별책임기술자), 분참(분야별참여기술자)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2 년 월 일

회사명 (주)○○엔지니어링
 대표자 ○○○ (인)

[서식5]

분야별 책임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6]

분야별 참여기술자

1.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성명	교육	(1) 자격	(2) 경력		배점한도		자기평가	
			인정일	참여년수	자격	경력	자격	경력
이분책	이수	건축구조기술사	6,112	16	6	5	6	4

* 경력인정일은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확인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7]

참여기술자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급 전문분야	기술자 인원수(명)						인원지수	평점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인원수		
건축분야	2	2	3	3	4	14명	7.4	12
계수	×1	×0.8	×0.6	×0.4	×0.2			
소계	2	1.6	1.8	1.2	0.8	7.4점		

합계점수	8이상	7이상	6이상	5이상	4이상	3.4이상
배점	13	12	11	10	9	8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1]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20건이상	4억원이상	정기안전	(실적) ×1.0		(실적) ×1.0
			계	건	계	원

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고
		착수일	준공일			
	소 계		건	원		

※ 붙임 : ①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8-2]

점검·진단 평가결과

용역명	제재일시	배점	처분	자기평가	
				감점	평점
		4	시정		
			부실		
계		4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1]

투자실적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용역업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 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p> <p>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서식12]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기술명	최초 지정 또는 출원일자	경과기간	출원 인수	배점	자기평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 계					2	

※ 붙임서류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및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등록원부 포함)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13]

별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별점	① 용역업체	-6			
	② 사업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② 분야별참여기술자				
합 계		-6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별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중’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끝.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수정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완료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432호(2024.4.12.)로 공고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내용에 누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수정사유 및 내용

- 수정사유 : 도시관리계획(와동소공원 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공원명 누락
- 수정내용
 - 당초 :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 결정

- 변경 :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와동 소공원	소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	1,832.6	대고 제2015-53호 (2015.4.3.) 최초 결정

2. 그 외의 사항은 당초 공고내용과 같음.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될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4).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4592, FAX : 042-608-3832, E-mail :
ryeng121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령화
(전화 : 042-608-45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사용(강습) 개시 전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사용(강습) 개시 후 :
3. 강당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인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4. 수영장, 체육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 시설의 사용료인 경우 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text{위약금}$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text{위약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text{위약금}$ - $[이용료 - (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text{위약금}$
5. 프로그램 수강료인 경우 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의 경우 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프로그램 개시 전 - 프로그램 개시 후 ·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 총 시간의 1/3 경과 전 총 시간의 1/2 경과 전 총 시간의 1/2 경과 이후 ·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초과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료까지 계속 수강 중 해제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기타 반환 기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식품위생업소의 용자지원 대상에 대하여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상당 금액을 지원받은 업소에 대하여 거치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해 발생 시 단란주점 등에 대한 용자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 3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7호).

나. 식품진흥기금 용자금 활용 시 용자금 거치, 상환기간 및 시설개선 기간 등을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전화 : 042-608-6893, FAX : 042-608-3835, E-mail : hsi031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과 담당자 홍성일(전화 : 042-608-68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개선율”을 “개선, 제7조제1항제7호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환으로”를 “상환(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3월”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용자금은 5개월)”로 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u>개선을 위한 용자</u> 사업은 제외한다.</p> <p>5.·6. (생략)</p> <p>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용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개선, 제7조제1항제7호</u> 를 -----.</p> <p>5.·6. (현행과 같음)</p> <p>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식품위생법 시행령</u>」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p>

② (생략)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
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말
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령 후 3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
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
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
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 4. (생략)

⑤·⑥ (생략)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
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환(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
로 -----.

④ -----

-----.

1. ----- 3개월(5천만
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
--. -----

-----.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소통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복합문화센터 명칭, 위치, 입주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복합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평생학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평생학습
원 평생학습과

(전화 : 042-608-5583, FAX : 042-608-3860, E-mail : s22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과 담당자 연소림(전화
: 042-608-55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입주시설) ① 센터에는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
2. 도서관, 다목적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 주민건강센터, 체육관 등 건강증진시설
4. 로컬푸드 직매장, 구내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입주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

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장소 외 취식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고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운영) 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감면, 무료 주차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①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시설의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시설에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시설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에는 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의무) 원장은 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중리동)
석봉 복합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5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m ²)	비 고
합 계			8.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27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지정 (대전상서·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와동	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8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5월 5일부터 2027년 5월 4일까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m ² 초과
	상업지역	150m ² 초과
	공업지역	150m ² 초과
	녹지지역	100m ²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m ²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m ² 초과
	임 야	1,000m ²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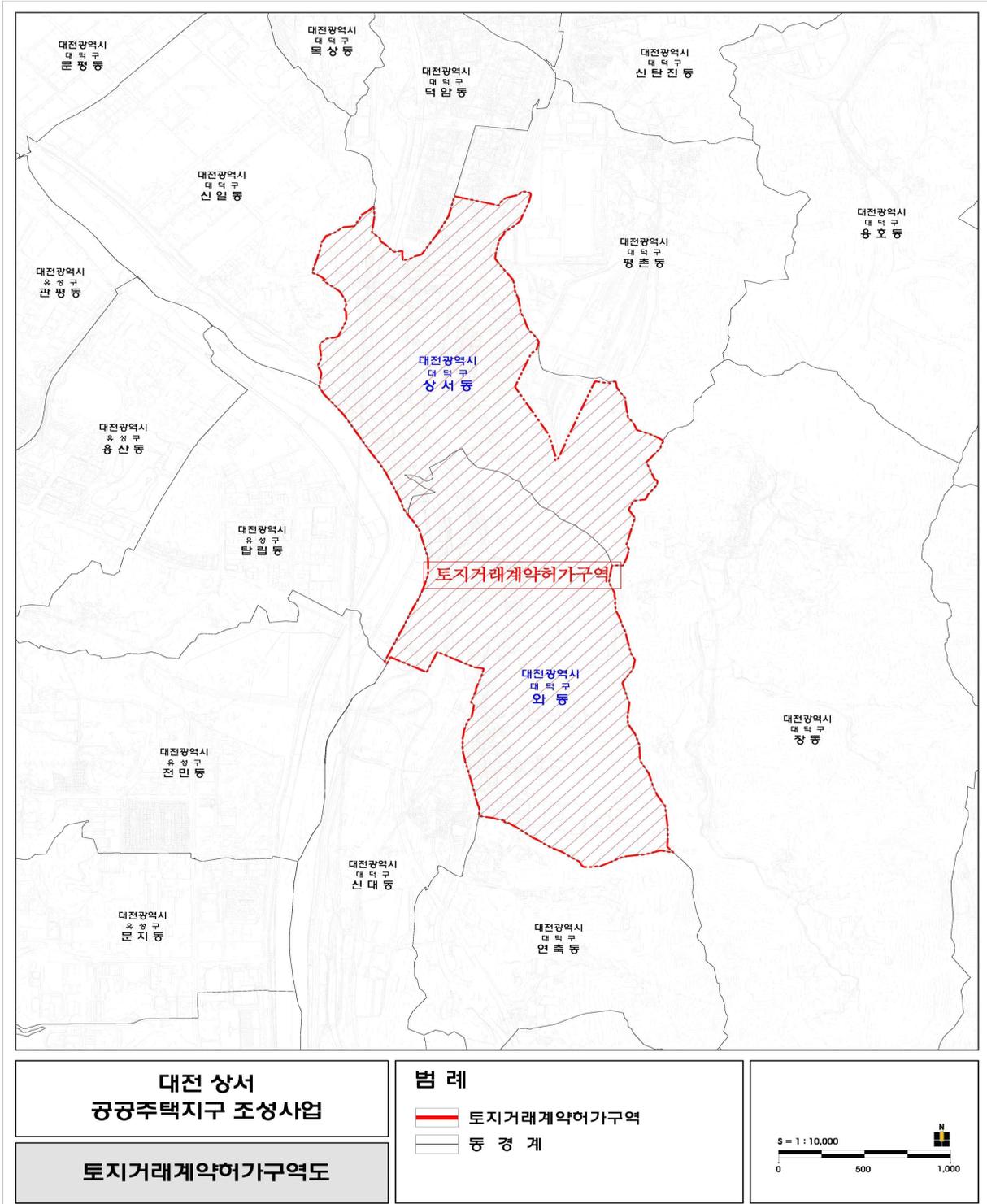
3.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4.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 대전상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재지정 】



끝.